"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보 도 자 료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 **보도일시: 1.9(목) 조간,**
<인터넷 1.8(수) 12:00 이후>
▸ 총 3 쪽

❖ 근로개선정책과 과 장 박 광 일
사무관 최 대 술
☎ 044-202-7528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전개

–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1.9~1.29)」 운영 –

□ 고용노동부는 **설 전 3주간(1.9.~1.29.)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한다.

* 근무시간: 평일 21:00, 휴일 09:00~18:00/ 근무장소: 고객상담실(민원실)

○ 이 기간 중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임금체불의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 전담반: 근로개선지도과장(반장), 근로감독관(반원)으로 구성·운영

- 특히, 다단계 하도급 등 체불 취약사업장을 상시 관리하며, 상습 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 구속현황: '10년 11명→ '11년 13명→ '12년 19명 → '13년 9명

□ 한편,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을 실시한다.

○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 1,000만원 한도로 생계비**(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를 **대부**하고,

- **퇴직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사업주 융자**(100만원~5천만원,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한도, 연리 3.0%~4.5%,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조건) **요건도 완화**하여 지원한다.

【체불청산 지원제도의 달라지는 주요내용('13.8.29, 개정)】

구 분		개정전	개정후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융자요건	체불임금액의 50% 이상을 사업주 재산으로 미리 지급	**삭 제**
	융자대상	퇴직 후 6개월 이하 근로자	**퇴직 후 1년 이하 근로자**
	경영상 어려움 판단 기준	기준달 대비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 15% 감소, 매출액 15% 감소, 원자재 15% 상승, 직전 2분기 연속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못 받은 경우 추가**

○ 또한,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 상한액 지급수준을 '14년부터 인상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체당금 상한액 고시('14.1.1.부터 적용)】

(단위: 만원)

퇴직당시 연령 / 체당금 종류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퇴직금	180	260	300	280	210
휴 업 수 당	126	182	210	196	147

※ 비고: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 기준임

- **도산한 1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당금 신청 업무를 **무료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체당금 및 생계비 대부액>

(단위: 억원, 명)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12
체당금 지급액 (근로자수)	1,881 (44,121)	3,080 (66,073)	2,639 (57,718)	2,356 (50,230)	2,323 (48,650)	2,239 (44,741)
생계비 대부액 (근로자수)	250 (5,492)	1,084 (20,876)	239 (5,045)	133 (2,938)	147 (3,249)	177 (3,490)

* 체불청산 지원사업주 융자액('13.12월): 79건(263명) 970백만원

□ 정부차원에서는 안전행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공사납품 대금을 설 전에 지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 아울러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어음지급에 따른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토록 지도**(공정거래위원회)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임금체불은 하루빨리 근절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등 제재강화와 체불근로자 지원강화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불임금 및 체당금 문의 :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객상담센터(☎1350)
▸생계비 대부제도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무료법률구조지원서비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과 이상곤감독관(☎044-202-753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체불임금 관련 통계자료

□ 연도별 체불임금 발생 현황

(단위 : 천명, 억원)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12
근로자수	301	292	277	194	249	301	276	279	285	267
금 액	10,426	10,291	10,297	8,403	9,560	13,438	11,630	10,874	11,772	11,930

□ 임금체불 신고 및 처리 현황

○ 사건 접수 및 처리

(단위 : 개소, 건, 명, 백만원)

연월	구 분	신 고			처 리			처리중
		계	신 규	이 월	계	지도해결	사법처리	
'13. 12월	사업장수	108,034	105,164	4,437	105,736	80,943	29,944	3,795
	건 수	181,180	173,855	7,325	175,039	114,064	60,975	6,141
	근로자수	266,506	255,201	11,305	257,840	157,644	100,196	8,666
	체불금액	**1,192,979**	**1,128,455**	**64,523**	**1,139,099**	**556,451**	**582,647**	**53,880**
'12. 12월	사업장수	110,479	108,311	3,546	107,637	84,635	28,238	4,453
	건 수	186,624	180,526	6,098	179,278	121,664	57,614	7,346
	근로자수	284,755	274,971	9,784	273,423	172,003	101,420	11,332
	체불금액	**1,177,166**	**1,119,824**	**57,342**	**1,112,443**	**625,164**	**487,279**	**64,723**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 중 체불액이 확정된 사건을 기준으로 집계

○ 임금내역별·업종별·규모별 체불임금내역('13.12월 기준)

금 품 별	임금	퇴직금	기타금품	기타
	6,789(56.9%)	4,571(38.3%)	569(4.8%)	1인당 448만원
주요업종	제조업	건설업	사업서비스업	도소매업
	3,904(32.7%)	2,605(21.8%)	1,448(12.1%)	1,347(11.3%)
규 모 별	5인 미만	5~30인 미만	30~100인 미만	100인 이상
	2,743(23.0%)	5,049(42.3%)	2,289(19.2%)	1,844(15.5%)
국 적 별	내국인		외국인	
	11,649(97.6%)		281(2.4%)	

<참고2>

체당금 상한액 신구조문 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th></tr>
<tr><td>Ⅰ. 체당금 상한액 고시
(단위: 만원)
<table>
<tr><th>퇴직당시 연령 / 체당금 종류</th><th>30세 미만</th><th>30세 이상 40세 미만</th><th>40세 이상 50세 미만</th><th>50세 이상</th></tr>
<tr><td>임금·퇴직금</td><td>150</td><td>240</td><td>260</td><td>210</td></tr>
<tr><td>휴업수당</td><td>105</td><td>168</td><td>182</td><td>147</td></tr>
</table>
※ 비고: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 기준임</td><td>Ⅰ. (현행과 같음)
(단위: 만원)
<table>
<tr><th>퇴직당시 연령 / 체당금 종류</th><th>30세 미만</th><th>30세 이상 40세 미만</th><th>40세 이상 50세 미만</th><th>50세 이상 60세 미만</th><th>60세 이상</th></tr>
<tr><td>임금·퇴직금</td><td>180</td><td>260</td><td>300</td><td>280</td><td>210</td></tr>
<tr><td>휴업수당</td><td>126</td><td>182</td><td>210</td><td>196</td><td>147</td></tr>
</table>
※ 비고: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 기준임</td></tr>
<tr><td>Ⅱ. 행정사항
1. 시행일: 2008년 1월 1일

2. 적용례: 고시 시행 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체불임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다만, 제4조제4호에 따른 도산등 사실인정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가 접수된 것을 말한다)한 체당금부터 적용하며, 고시 시행일 전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신설)</td><td>Ⅱ. (현행과 같음)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후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6년 12월 25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td></tr>
</table>